

한국체육대학교 자체 평가규정

제정 2011. 8.31. 규칙 제565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학생 및 교원 평가 이외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에 대한 각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“자체평가”라 함은 총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본교 전체 및 분야별 평가를 말한다.

②“외부평가”라 함은 정부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본교 전체 및 분야별 평가를 말한다.

제3조(평가의 구분 및 대상) ①평가는 평가시행기관에 따라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분한다.

②자체평가는 행정부서 평가, 학과 평가, 부속시설(연구소 포함) 평가, 자체종합평가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되, 다음 각 호를 평가대상으로 한다.

1. 행정부서 평가 : 행정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2. 학과 평가 : 학과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3. 부속시설 평가 : 부속시설(연구소 포함)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(「국립학교설치령」 제 7조 제 4항 관련)
4. 자체종합평가 :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(「고등교육법」 제 11조 의2 제 1항 관련)

③외부평가는 분야별로 기관평가 인증 및 전문분야 평가로 구분하되, 다음 각 호를 평가대상으로 한다.

1. 기관평가 인증 :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전문분야 평가 : 외부 평가기관에서 지정한 특정 분야

제4조(평가의 주기 및 기간) ①행정부서 평가와 학과 평가는 1년 주기로 직전 학년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, 부속시설 평가와 자체종합평가는 2년 주기로 평가 시행년도의 직전 학년도 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

② 외부평가는 평가기관에서 지정한 평가 주기 및 기간으로 한다.

③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2 제 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이 기관평가 인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5조(평가기획위원회) ① 평가업무의 종합적 심의를 위하여 평가기획위원회를 둔다.

② 평가기획위원회는 기획처장, 대학원장, 사회체육대학원장, 스포츠과학대학장, 생활체육대학장, 교학처장, 사무국장, 훈련처장, 학술정보원장, 평생교육원장, 생활관장, 종합인력개발센터장, 체육과학연구소장으로 하고,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③ 평가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평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자체평가의 방향과 지침에 관한 사항
4.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

④ 평가기획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평가기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평가연구위원회) ① 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평가분야별로 평가연구위원회를 둔다.

② 평가연구위원회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행정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평가연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
1. 평가시행 세부계획의 수립
2.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편람 작성
3. 자체평가 수행 및 평가보고서 작성
4. 외부평가 편람과 지표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

④ 평가연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으로 의결한다.

⑤ 평가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분야별 평가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평가의 지표 및 방법) ① 자체평가의 평가지표는 평가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평가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② 자체평가의 방법은 서면평가로 하되, 필요 시 현장 방문평가와 그 밖의 평가방법을 병용할 수 있다.

③ 외부평가는 평가기관에서 정한 평가 지표와 방법에 따른다.

제8조(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제출) ① 평가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평가 기본계획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평가대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자료를 평가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평가결과 제출과 통보) ① 평가연구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평가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평가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③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

제10조(재심청구와 재심위원회) ① 자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평가기획위원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청구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.

③ 재심위원회는 재심을 청구한 부서의 장에게 재심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평가결과의 활용) ① 평가기획위원장은 평가결과를 해당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자체종합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시한다.

② 평가결과는 교직원과 부서의 인센티브 자료, 대학발전계획과 행정·재정적 업무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 12 조(수당) 평가기획위원회, 평가연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본교의 평가 관련 사항은 평가기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정 2011. 8.23. 규칙 제56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련규정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 자체 평가규정과 부속시설 평가규정은 폐지한다.

제3조(행정부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 제1호의 행정부서의 평가 시행시기는 2012년도 이후에 시행한다.